

##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한진중공업의 횡포 유형

- 선시공 후계약·저가계약 강요
- 기성금도 적은 금액을 제시
- 선행공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불인정
- 하자이행보증금 지연 지급
- 합의서를 미작성 시  
입찰 참여 제외

### ■ "하청업체 어려움을 악용"

1518t짜리 탑재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5년 말이었다. 한진중이 견적서를 요구하면서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일방적으로 2억6800만원이라고 적힌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해민씨텍에 보내왔다. 해민씨텍은 3억1747만원짜리 견적서를 보이며 "금액이 너무 적다. 앞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진중은 "두번째 선박의 탑재블록 설치공사에서는 손해 없도록 해주겠다"며 두번째 물량을 맡겼다. 해민씨텍은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해민씨텍 오해경 사장은 "당시 일감을 계속 얻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한진중은 일정 공정이 진행된 후 매월 지급하는 기성금(중간결제금)도 턱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해민씨텍은 시급히 지급해야 할 노동자들의 임금과 세금납부를 위해 한진중의 횡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했다.

한진중은 자신들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하청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 발생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 다대포공장에서 공사했으나 느닷없이 영도공장으로 작업장을 이전해 다대포공장에서 진행한 인건비·자재비 등은 해민씨텍이 끌어안아야 했다. 매월 5% 공제하는 하자이행보증금도 공정완료 후 6개월 내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한진중은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다. 오 사장은 "하자이행보증금을 오랜 시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한진중이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